

담당	책임자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

신탁계약일	계약명	계약번호				
구 분	내용					
제2조	신탁금액					
제3조	신탁기간 (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					
제4조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신탁이익의 수익자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제7조	운용내역 통보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제13조	신탁기본보수	<input type="checkbox"/> 선취기본보수 = 신탁금액 x () % <input type="checkbox"/> 후취기본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x ()% x 신탁기간(일수) ÷ 365				
제17조	중도해지	<p>1. 구간별 징구</p> <table border="1"> <tr> <td>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td> </tr> <tr> <td>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td> </tr> <tr> <td>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td> </tr> </table> <p>2. 경과기간별 징구</p> <table border="1"> <tr> <td>해지 신탁금액의 ()%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 신탁기간 총일수</td> </tr> </table>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해지 신탁금액의 ()%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 신탁기간 총일수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해지 신탁금액의 ()% x 중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수 ÷ 신탁기간 총일수						
제24조	특약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위탁자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대리인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음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문자통보안내) 신청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알림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 - 신탁만기도록, 운용자산 만기도록, 추가입금액,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	고객명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	--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 _____ 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추가신탁 할 수 있다. 이 때 윤용방법의 변경 없이 추가신탁을 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교부 가능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윤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탁원본의 수익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신탁이익의 수익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인 윤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윤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윤용지시에서 기재하여 윤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윤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윤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개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증거회사의 종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윤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윤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윤용할 때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 윤용한다.

⑤ 위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윤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내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윤용방법에 대하여 내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자사권을 내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내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내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윤용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윤용내역 통보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일) 위탁자 : _____ (인/서명)
------------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뢰자에게 윤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법적절차)

신탁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원본과 이의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의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임을 표시한다.

제13조 (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는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선취기본보수와 후취기본보수의 합으로 한다.

1. 선취기본보수

$$\text{선취기본보수} = \text{신탁금액} \times ()\%$$

제17조에 따라 신탁을 종도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미경과 신탁기간에 대한 선취기본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원활한다.

2. 후취기본보수

$$\text{후취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div 365$$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로부터 제 3 항에서 정한 신탁 보수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후취기본보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본은 최초 신규일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 만료일 ()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일부매입 포함)을 신청한 날 이후 ()영업일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한다.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광장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한다.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④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

기준지표()

⑤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과 기본보수, 종도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보수에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중료시 기준지표 대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중료시 기준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 계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애지(일부매입 포함)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5. 기타()

② 신탁이익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 재산 중에서 총당장이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17조 (종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종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종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 ()호에서 정한 종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1. 구간별 징구

- 신탁계약일로부터 ()미만 경과시 : 애지 신탁금액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금액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경과시 : 애지 신탁금액의 ()%

2. 경과기간별 징구

해지 신탁금액의 ()% × 종도해지일 익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잔존일 수 ÷ 신탁기간 총일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애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애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애지하는 경우

④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종도해지하는 경우 종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8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만료한 때

2.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신탁계약이 애지된 때

②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운용을 종단하고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현재 신탁재산 유통여성상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